

철골 조립작업 중 떨어짐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사명 | ○○공장 신축공사 | 발생일시 | 2019.11.08.(토) 15:15경 |
| 재해형태 | 떨어짐 | 재해정도 | 사망 1명 |
| 소재지 | 인천시 서구 | 공사규모 | 지상2층, 1개동 |
| 재해개요 | 2019. 11. 09.(토) 15:15경 인천 서구에 소재한 ○○(주)가 시공중인 「○○푸드 인천공장 신축공사」 현장에서 협력업체 ○○(주) 소속 근로자인 이○○ (만57세, 남, 철골공)가 X4,Y3열 구간의 지붕 철골을 설치한 후 이동 또는 작업 중,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1층 바닥(H≒10.6m)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, 재해발생당일 18:20경 사망한 재해임. | | |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

○ 추락의 방지 철저

- 사업주는 철골구조물의 설치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,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.

○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

-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.
-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○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

- 사업주는 철골구조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.



재해조사당시 현장 모습



재해조사당시 피해자 작업위치 주변 모습